



제334회 정례회

2014.09.16.

행복한 도민, 신뢰받는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09월 03일

○ 회부일자 : 2014년 09월 1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전문직원 직위 승인통보¹⁾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조정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조정(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)

- 1)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 △1 →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정원 +1

나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삭제 및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(개정안 제2조, 별표3)

- 1)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총정원 △7 →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+7
- 2) 충청북도도의회 사무처 일반직 4급 △1 →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일반직 4급 +1

1)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3517(2014.06.16.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직급이 교육부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에서 1명을 감원하고,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이며,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 7명을 삭제하여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합산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

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5.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0.2.26.] [법률 제10046호, 2010.2.26., 일부개정]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